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6. 1. 22.
내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6년 1월 17일

· 회부일자 : 1996년 1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121회 임시회

· 제4차 내부위원회(1996. 1. 22.)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부국장 최 경 주)

가. 제안이유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으로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가.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휴차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기간별 년가를 확대 조정함(안 제15조 제1항)
- 다. 공무원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할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6호 및 제7호)
- 라.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5항 제4호)
- 마.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20조 제6항)

3.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오 창 환)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공무원 복무규정이 19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함으로서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 현행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사고방지등 평상시의 당직근무 체제에서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등의 비상사태를 대비한 비상근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등의 변경조항의 자구수정과
-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년가일수를 현행 3월이상 6월미만의 경우 3일인것을 4일로, 1년이상 2년미만을 8일에서 10일로, 2년이상 3년미만을 11일에서 13일로, 3년이상 4년미만을 14일에서 16일로, 4년이상 5년미만을 17일에서 19일로, 5년이상 20일을 5년이상 6년미만으로 하여 22일 그리고 6년이상 근속공무원의 년가일수를 23일로 하는 등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확대조정하는 것과 근속기간의 산정방법 및 공부수행상 연가를 할 수 없거나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일수의 제한규정과 연가일수의 산입방법 및 병가허가의 범위에 관련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 공가에 있어 훈련참가나 투표참가시 공가신청을 할 수 있던것을 공부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 할 때에도 신청허가할 수 있도록 확대 신설하였고
- 특별휴가의 경우 그 휴가의 성질에 따라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여성보진휴가, 수업휴가, 포상휴가, 승선휴가, 퇴직준비허가 등 휴가대상종류를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과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 겸직허가에 있어서는 법적용 조문을 명확히하여 자구수정 하였으며
- 준용조항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련한 정치적 행위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개선 보완하고 복무관리체계를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서 승인하여 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도원안대로 의결(참석 8인, 찬성 8인)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신규 조문 대비표